

도 보



제796호. 2019. 7. 1.(월)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목 차

조 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308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309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9년 6월 20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회 롱

2019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308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경우는 4급)인 장애인으로서”를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이미 제출된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2조 관련)

1. 각종 증명발급

구 분	기준	수 수 료 (단위 : 원)	소관부서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물품납품실적 증명	1통	400	회계과
(2)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1통	400	회계과
(3)공사시공실적 증명	1통	400	회계과
(4)용역이행실적 증명	1통	400	회계과
나. 기타 제증명			
(1)수산업에 관한 증명	1건	400	수산정책과
(2)사실확인서 발급	1통	400	자치행정과
(3)(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 증명	1통	400	보건건강위생과
(4)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 증명	1통	500	보건건강위생과
(5)그 밖의 인허가 등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사실증명	1통	400	자치행정과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구 분	기준	수 수 료 (단위 : 원)	소관부서
가. 산업 관계			
(1)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등록 신청	1건	50,000	안전정책과
(2)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안전정책과
(3)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1건	4,000	안전정책과
(4)승강기 부품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	1건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2명×심사일 2)면제확인서 발급신청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안전정책과
(5)승강기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1건	4,000	안전정책과
(6)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	1건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2명×심사일 2)면제확인서 발급신청수수료 :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안전정책과
(7)승강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1건	4,000	안전정책과

구 분	기준	수 수 료 (단위 : 원)	소관부서
나. 의료기관 관계			
(1) 「의료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신고 수수료	1건	10,000	보건건강위생과
(2) 「의료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	10,000	보건건강위생과
다. 수·축산업 관계			
(1)수산업 관련			
(가)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	1건	2,000	수산정책과
(나)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1건	10,000	해운항만과
(다)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1건	10,000	해운항만과
(2)축산업 관련			
(가)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전단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1건	30,000	축산과
(나)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후단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	1건	10,000	축산과
라. 소하천 정비 관련			
(1)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재난대응과
(2)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	재난대응과
(3)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000	재난대응과
마. 개인정보 열람·정정			
(1)열람	1건	200	정보정책과
(2)출력	1매	300	정보정책과
(3)정보정정	1건	300	정보정책과
바. 기타			
(1)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500	자치행정과
(2)각종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등 열람	1건	100	자치행정과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
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9년 6월 20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9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309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목원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3. 국민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2.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수목원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2.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임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으로 한정한다)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5.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④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라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제6조제1항 관련)

입장료	주차료				비고
	구분	경차	소형	중·대형	
무료	승용 자동차	기본 (2시간까지)	500원	1,000원	
		초과30분당	300원	500원	
	승합·화물 자동차	기본 (2시간까지)	500원	1,000원	4,000원
		초과30분당	300원	500원	2,000원

※ 비고

1. 주차장 유료운영시간 : 3월부터 11월까지 09:00~18:00,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09:00~17:00
2. 자동차의 종별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1) 승합차 - 경형 : 배기량 1,000cc미만, 소형 : 15인승 이하, 중·대형 : 16인승 이상
 - 2) 화물자동차 - 경형 : 배기량 1,000cc미만, 소형 : 1톤 이하, 중·대형 : 1톤 초과